감사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SK스퀘어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)

-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4조 (구성 및 위원선임)

- ①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②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.
- ③감사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이사회 업무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① 감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둔다.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권한)

-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.
 - 1. 상법 제415조의2 및 제412조 소정의 이사직무집행감사권, 영업보고요구권, 업무·재산상태조사권
 - 2. 상법 제415조의2 및 제412조의5 소정의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
 - 3. 상법 제415조의2 및 제402조 소정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
 - 4. 상법 제415조의2 및 제394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
 - 5. 상법 제415조의2 및 제412조의3 소정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
 - 6. 상법 제415조의2 소정의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
 - 7.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감사인 선정
 - 8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 일을 및 공시)에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중 상품·용역의제공·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(2023.11.29. 본 호 개정)
 - 9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(이하 "계열회사"라 한다)와 수의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로서 계약 건당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품 및 용역 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
 - 10.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로서 동일 회계연도내 동일 거래유형의 추정 총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일괄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품 및 용역 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
 - 1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에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중

자금·유가증권·자산의 제공·거래로서 정기적 또는 정형적인 거래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과 연간/반기/분기 등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거래로서, 거래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거래금액/거래기간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거래)에 대한 심의 및 승인 (2023. 11. 29. 본 호 개정)

- 12. 상법 제542조의9(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)에서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 (2023. 11. 29. 본 호 개정)
- 13.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·개정에 대한 승인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
- 14.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 제8호 내지 제12호에 따라 승인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1. 거래목적 또는 거래대상의 변경
 - 2. 거래상대방의 변경(다만, 상호변경, 영업양수도·합병에 의한 변경 등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 제외)
 - 3. 거래금액의 변경(다만,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20% 이상 증가한 경우, 제11호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20%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, 제12호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승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)
 - 4. 기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
- ③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7조 (내부감사부서)

- ①회사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며,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업무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(2023. 6. 22. 본 항 개정)
- ②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.(2022. 9. 27. 본 항 개정)
 - 1.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인사평가 승인
 - 2. 내부감사부서의 조직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검토 및 의견 개진

제8조 (소집)

- ①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감사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다.

제9조 (의결방법)

- ①감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의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단,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단,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.
- ⑤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및 의결 참여에 관하여 이사회규정 제10조 제4항을 준용한다.

제10조 (의사록)

- ①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1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(2021.11.25.)

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9. 27.)

이 규정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6. 22.)

이 규정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11. 29.)

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